



전남새뜸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별지 2010. 12. 20(월)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2918호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 시

- | | |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72호 | 영광 상오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계획승인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0호 |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2호 | 영광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3호 | 강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4호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5호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6호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7호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0-400호 | 화순 백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

공 고

- | | |
|--------------------|------------------------------|
| 전라남도 공고 제2010-847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전라남도 공고 제2010-848호 |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지구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
| 전라남도 공고 제2010-854호 | 측량업 등록 공고 |

시 군 행 정

- 목포시 고시 제2010-10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이로초교 체육관 옆 도로개설 외 6개소)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10-107호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10-10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고하도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10-10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10-24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10-250호 여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10-25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10-25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굴전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 담양군 공고 제2010-727호 청평면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 담양군 고시 제2010-46호 담양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양군 고시 제2010-47호 담양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화순군 고시 제2010-72호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화순군 고시 제2010-73호 화순 군계획시설(소로2-70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해남군 공고 제2010-950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 공고
- 영암군 공고 제2010-667호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공람 공고
- 영암군 고시 제2010-66호 영암 군계획시설(F1경주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기간연장) 고시
- 영광군 고시 제2010-69호 영광군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유 관 기 관

익산청 공고 제2010-176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공고



전라남도

녹색의 땅

www.jeonnam.go.kr

전남새뜸

발행인: 박준영 / 발행처: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 534-700 / 전남새뜸(直) 286-2074/FAX 286-4722 / http://news.jeonnam.go.kr

별지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The jeonnam News

본지에 실린 조례·공고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0-84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상호·명칭 및 대표자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길종일	2010.12.10	전남100008	28억원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2-11
디오이엔씨(주) 해재영	2010.12.10	전남100009	7억원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58

전라남도 공고 제2010 - 848호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지구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제2조 제2호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 한옥관광자원사업 지구 신규지정

위치				지정면적	필지수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마을명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괴목마을	102,112㎡	135필지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외동마을	151,086㎡	168필지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장동마을	106,145㎡	113필지	
장성군	서삼면	주암리	괴정마을	113,328㎡	128필지	

*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각 시군 담당부서와 행복마을과 비치
(연락처 061-286-3522)

□ 한옥관광자원 사업지구 지정취소

위치				지정면적	지정일자 (공고번호)	지정취소사유
시군	읍면	동리	마을명			
순천시	-	흉내동	흉내마을	86,863㎡ (223필지)	2010. 4. 13 (공고 제2010-260호)	한옥 10호이상 기한내 신축이 어려워 지정 취소 요청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신광마을	37,847㎡ (93필지)	2010. 6. 8 (공고 제2010-399호)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관동마을	105,024㎡ (182필지)	2010. 6. 8 (공고 제2010-399호)	

전라남도 공고 제2010-854호

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도정방침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 1.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 2. 살고 싶은 농어촌 거점성
- 3. 앞서 가는 미래 산업 육성
- 4.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 5. 찾아가는 도민 복지 실현

□ 일반현황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일	비고
일반 측량업	제05-02-2337호	광호측량설계공사	고영훈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206	2010.12.13.	

□ 기술자현황

기술등급	성명	비고
고급기술자	고영훈	
초급기능사	김성수	

□ 임원현황

성명	주소	비고
고영훈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206	대표이사

□ 장비현황

구분	보유현황	비고
장비기준	O 토탈스테이션 : 규격 TCR805UITRA 기기번호 252691	각도 2급, 거리 2급
	O 오토레벨 : C-32 기기번호 311250	3급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2호

영광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09-444호(2009. 11.20)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영광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516-1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사업
 - 나. 명칭 :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면적 : 9,982㎡
 - 나. 개요 :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가. 성명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장)
 - 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 예정일 : 2009. 6(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나. 준공 예정일 : 당초 - 2010. 12. 31. 변경 - 201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 계재생략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계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36), 영광군 도시과(☎ 061-350-4982),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061-430-21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3호

강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09-443호(2009.11.20)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강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1-1번지 일원(변경없음)
 - 가. 공공청사 :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198-10번지 일원
 - 나. 연구시설 :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청사이전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501,997㎡ (공공청사 14,694, 연구시설 487,303)
 - 나. 개 요 :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가. 성 명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장)
 -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 예정일 : 2009. 7(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나. 준공 예정일 : 당초 - 2010. 12. 31. 변경 - 201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 계재생략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계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35), 강진군 청 도시개발팀(☎ 061-430-3325),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061-430-21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4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10. 12. 13.
2. 매립면허를 받은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신안군수
 - 주 소 : 전남 목포시 북교동 178-1번지
3. 매립 목적 : 공공시설용지(연안정비사업)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일원 공유수면
 - 면 적 : 7,096㎡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1. ~ 2012. 6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순실방지시설의 개요
 - 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 : 없음
 - 오타 방지시설 : 총 연장 m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5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10. 12. 13.
2. 매립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영광군수
 - 주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번지
3. 매립 목적 : 기타시설용지(불양장 설치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항 일원 공유수면
 - 면 적 : 3,77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1. ~ 2011. 10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순실방지시설의 개요

- 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 : 없음
- 오타 방지시설 : 총 연장 m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사업명	합평 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합평군수	주 소	전남 합평군 합평읍 중앙길 200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주거환경과 공중 보건 향상		
사업위치 및 용량 등	위 치	전라남도 합평군 합평읍 진양리 149-1	
	처리용량	85톤/일	처리공법
예정처리구역	현수다단계 고도처리공법(가변형 BRC)		
사업시행기간	2010. ~ 2011.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합평군 합평읍 진양 149-1	답	백귀순
	면적 (㎡)	803.0	면적 (㎡)

* 관계 도서 공립장소 : 합평군 환경상하수도과(061-320-3488)

전라남도 고시 제2010-397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사업명	합평 옥동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합평군수	주 소	전남 합평군 합평읍 중앙길 200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주거환경과 공중 보건 향상		
사업위치 및 용량 등	위 치	전라남도 합평군 대동면 금곡리 1034-8	
	처리용량	45톤/일	처리공법
예정처리구역	현수다단계 고도처리공법(가변형 BRC)		
사업시행기간	2010. ~ 2011.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대동면 금곡리 1034-8	답	해당 없음
	면적 (㎡)	803.0	면적 (㎡)

* 관계 도서 공립장소 : 합평군 환경상하수도과(061-320-3488)

목포시 고시 제2010-10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이로초교 체육관 옆 도로개설 외 6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목포 도시계획시설(이로초교 체육관 옆 도로개설 외 6개소)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구 분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수 도	통합센터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294-6	-	2,630	2,630		
신설	⑥	수 도	무정배수지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산79-5	-	2,210	2,210		
신설	⑦	수 도	대덕배수지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산52	-	2,290	2,290		
신설	⑧	수 도	남면배수지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91	-	1,300	1,300		
신설	⑨	수 도	무정가압장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69-3	-	240	240		
신설	⑩	수 도	대덕가압장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54-3	-	200	200		
신설	⑪	수 도	남면가압장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154-1	-	300	300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⑤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294-6 - 면 적 : (증)2,630m ²	담양읍에 통합센터를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⑥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산79-5 - 면 적 : (증)2,210m ²	미급수지역인 무정면 일원에 무정배수지를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⑦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산52 - 면 적 : (증)2,290m ²	미급수지역인 대덕면 일원에 대덕배수지를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⑧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91 - 면 적 : (증)1,300m ²	미급수지역인 남면 일원에 남면배수지를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⑨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69-3 - 면 적 : (증)240m ²	미급수지역인 무정면 일원에 무정가압장을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⑩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54-3 - 면 적 : (증)200m ²	미급수지역인 대덕면 일원에 대덕가압장을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⑪	수 도	· 신 설 - 위치 :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154-1 - 면 적 : (증)300m ²	미급수지역인 남면 일원에 남면가압장을 신설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함

해남군 공고 제2010-950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 공고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외 2필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0. 12. 20

해남군수

-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외 2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번지
 -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김성주
- 인가 신청내용
 - 면적 : 24,042m²
 - 가공처리시설 및 냉동창고 : 11,091m²
 - 판매시설 및 사무실 : 4,831m²
 - 녹지 : 3,643m², 도로 : 2,797m², 주차장 : 888m², 공영차고지 : 792m²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6.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91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면입면적 (m ²)	소유자	주 소	비 고
1	해남읍 안동리	102-4	임	20,648	19,708	해남군수산업 협동조합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	
2	해남읍 안동리	106	전	3,749	3,749	남요인 외 1인	해남군 해남읍 해리 306-1	
3	해남읍 안동리	102-3	전	585	585	김성주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667	
계					24,0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76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12.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2호선
공사의 종류	국도 2호선 (비관리청공사 시행)		
구 간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 하의면 불도리		
공사시행장소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공사 기간	공사 착수일로부터 1,800일 (60개월)		
공사목적 및 규모	- 하의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 접속도로 768m(B=13.5~14.5m), 교량 550m(2주탑 사장교)		
접 용 자 의 주소 · 성명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 061-286-7442)	기타사항	☎ 062-970-6340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 규칙 제2918호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 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문절차에 앞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세부 운영규정) 도지사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여: 명)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⑦ 주된 사업						
⑧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⑪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의 내용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구비 서류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의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전라남도 제 20 (연도) - (연번) 호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기간 : 20 . . . ~ 20 . . .							
위 기관을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근로자수	명						
	신청근로자 수	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계좌번호	(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	기관의 영업활동 수입		원					
	후원금(기업·개인·모범인 등)		원					
	전라남도 지원 신청 금액		원					
	시·군 지원 신청 금액		원					
	소계		원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별지 제4호서식>

사업보고서								
조직	기관명			대표자명				
	(주된)소재지							
	주된 목적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업종							
	연계기업명							
기관일반현황	총근로자수 (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비율(B/A)	%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20세 미만	명	20세 이상 30세 미만	명	30세 이상 55세 미만	명	
	고용계약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월평균 임금	정규직		원	비정규직		원	
	근로시간	주40시간		명	주 40시간 이하		명	

기 관 일 반 현 황	총수입: 원				총비용(지출): 원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노무비 (인건비)	교육 훈련비	기타	
	원(%)	원(%)	원(%)	원(%)				
	민간 시장	공공 시장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금액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일반			
	총계: 명				총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저소득층	명	저소득층	명				
	고령자	명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장애인	명				
사업주진실적	서비스 분야 및 내용							
	사회서비스제공	평균	원	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	총 계	명		
		일반주민	원		취약계층 비중 (B/A)	%		
	취약계층	원		일반주민 (A)	명			
				취약계층 (B)	명			
기타								
향후사업계획	별지 작성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0-24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0. 12. 20

여수시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명 칭 : 여수오션리조트특구개발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 적(변경없음) : 120,941㎡
(유원시설 116,498㎡, 도로시설 4,443㎡)
 - 규 모(토지이용계획)
 - 속박시설 : 당초 - 24,230㎡, 변경 - 21,368㎡
 - 호 텔 : 당초 - 15,597㎡(건축면적 9,038.57㎡)
변경 - 12,735㎡(건축면적 9,769.54㎡)
 - 콘도미니엄 : 당초 - 8,633㎡(건축면적 4,878.99㎡)
변경 - 8,633㎡(건축면적 4,878.99㎡)

- 위락시설 : 당초 - 18,500㎡(건축면적 5,829.02㎡)
변경 - 18,800㎡(건축면적 5,829.02㎡)
- 단지내 기본시설
- 당초 : 32,777㎡(도로 26,130㎡, 광장 3,085㎡, 주차장 3,562㎡)
- 변경 : 33,163㎡(도로 25,569㎡, 광장 4,167㎡, 주차장 3,427㎡)
- 녹지 : 당초 - 45,434㎡, 변경 - 47,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가. 성명 : 당초 - (주)일상 대표이사 홍선희
변경 - 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창주
- 나. 주소 : 당초 - 여수시 학동 67-10번지
변경 -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05. 4. 15.
나.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 2010. 12. 31. 변경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계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 계재생략

8. 관계도서(변경) : 계재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9. 인가조건(변경) : 계재생략

여수시 고시 제2010-250호

여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경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부지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고시 제2008-67호(2008. 4. 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0

여수시장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사유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구역확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73호) 및 토지매입 완료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가. 위치 :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나. 면적 : 2,460.838㎡

3. 해제일시 : 2010. 12. 15

4. 관련도서 : 계재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90-7133 담당자 서명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0-25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삼산면 거문리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0

여수시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

1). 기본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폐기물 처리시설	-	거문리 116-2 일원	2,431	증)105	2,536	04.4.16(여고제24호)	

(나)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7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증가 2,431㎡ → 2,536㎡ 증)105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면적증가

2). 가구 및 흙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흙지			비고
			위치	면적(㎡)		
주거지	1	61,480	거문리 83대 일원	106,280	-	106,280
	1-1			1,510	-	1,510
	1-2			5,440	-	5,440
	1-3			1,660	-	1,660
	4			1,450	-	1,450
	5			4,690	-	4,690
	5-1			2,250	-	2,250
	5-2			360	-	360
	7			2,920	-	2,920
	9			5,920	-	5,920
	9-1			620	-	620
	11			1,950	-	1,950
	14			6,210	-	6,210
	15			4,760	-	4,760
상업지	3	6,240	거문리 87-42대 일원	6,240	-	6,240
	6			780	-	780
	8			600	-	600
	10			240	-	240
	16			660	-	660
녹지	2	38,560	거문리 87-5 잡 일원	38,560	-	38,560
	12			5,590	-	5,590
	13			27,154	감)105	27,047
	13-1			205	-	205
	13-2			2,431	증)105	2,536
						폐기물처리시설

3).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미화과 이광호 ☎061-69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고 제2010-667호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전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0. 12. 20.

영암군수

다. 가구 및 흙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흙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108,811		108,811	
1	BL 1	93,750	산업시설공간	분할·합병가능	
			①	3,718	
			②	5,008	
			③	5,036	
			④	5,010	
			⑤	5,019	
			⑥	5,131	
			⑦	14,485	지원시설공간
			⑧	1,443	공원녹지공간 (녹지)
			⑨	2,115	공원녹지공간 (공원)
			⑩	8,748	공원녹지공간 (녹지)
			⑪	1,100	공공시설공간 (주차장)
			⑫	5,007	
			⑬	7,394	
			⑭	8,870	
			⑮	4,341	
			⑯	3,896	
			⑰	3,916	
			⑱	3,513	
BL 2	BL 2	15,061	산업시설공간	분할·합병가능	
			①	3,779	
			②	3,753	
			③	3,736	
			④	3,79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용지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공간	BL1 ①~⑥ ⑫~⑯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L2 ①~④	건폐율	○ 80%
		용적률	○ 350%
		높이	○ 목포시 조례에 따름
자원 시설 공간	BL1 ⑦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용적률	○ 350%
		높이	○ 목포시 조례에 따름
공원 녹지 공간	BL1 ⑧, ⑩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공원관리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공공 시설 공간	BL1 ⑪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에 따른 도시공원 중 소공원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7.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

- 개발대행자 :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흥종희
- 개발대행자의 주소 : 전남 목포시 연산동 618-64
- 개발대행위치 : 전남 목포시 연산동 681-9번지외 2필지
- 개발대행목적 : 첨단세라믹 지원시설 구축을 통한 전문기업 유치 육성
- 개발대행규모 : 부지 5,131m², 건축연면적 3,159m²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 다음
- 9. 관련도서 열람방법
목포시청(도시계획과 061-270-344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대 장	편 입			권리관계	체무자	권리자	
총 계 (116필지)				127,646	116,455						
소 계 (10필지)	대	1,560	1,560								
1	연산동	639-3	대	83	83	용당동 882-17	조덕수				
2	연산동	639-17	대	218	218	연산동 639-17	유금성				
3	연산동	640-0	대	129	129	용당동 882-17	조덕수				
4	연산동	641-1	대	53	53	용당동 882-17	조덕수				
5	연산동	641-2	대	76	76	연산동 803	정복인				
6	연산동	641-3	대	89	89	용당동 882-17	조덕수				
7	연산동	641-6	대	307	307	용당동 882-17	조덕수				
8	연산동	642-3	대	182	182	연산동 642-3	박권문	근저당권	박권문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산정지점)
							지상권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산정지점)
							근저당권	박권문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산정지점)
9	연산동	775-26	대	367	367	연산동 775-26	안천영	근저당권	안천영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10	연산동	775-55	대	56	56	연산동 633	박권문				
소 계 (71필지)	전	53,780		49,014							
11	연산동	618-13	전	347	346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12	연산동	629-1	전	1,283	1,283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13	연산동	633-1	전	129	129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92	김영안	근저당권	김영안	운남농업 협동조합	무안군 운남면 연리 408
14	연산동	633-3	전	1,412	1,412	연산동 584	조원기	근저당권	조상우	목포농업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산정지점)
							지상권	조상우		목포농업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산정지점)
							근저당권	조상우		목포농업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산정지점)
15	연산동	634-1	전	132	132	산정동 623	정복인				
16	연산동	634-3	전	1,091	1,091	연산동 628-1	강보립				
17	연산동	634-4	전	258	258	산정동 1673-16	김진국				
18	연산동	635-10	전	926	330	연산동 628-1	강보립				
19	연산동	635-11	전	509	318	연산동 809-1	김억근				
20	연산동	635-12	전	205	46	용당동 885-6	윤연해	근저당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지상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근저당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공고·고시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별지 **전남새뜸 1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대 장	면 일	권리관계	제 무자	권리자	
103	연산동	618-39	유	7,200	3,469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104	연산동	642-11	유	162	162	연산동 642-3	박권문	근저당권	박권문	목포농업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산정지점)	
						지상권		목포농업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산정지점)			
						근저당권		박권문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산정지점)		
						근저당권		박권문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산정지점)		
소 계 (1필지)		묘	522	415								
105	연산동	651-0	묘	522	415	연산동 373	공천행					
소 계 (4필지)		염	37,228	35,951								
106	연산동	618-8	염	20,099	20,099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107	연산동	618-9	염	10,404	10,404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108	연산동	618-29	염	2,642	2,642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109	연산동	618-40	염	4,083	2,806	연산동 1260 주공 3단지아파트 301 -1006	오경호					
						대전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13-707	오경진					
소 계 (2필지)		장	15,486	15,486								
110	연산동	633-0	장	610	610	용당동 885-6	윤연해	근저당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지상권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근저당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111	연산동	618-64	장	14,876	14,876		목포시					
소 계 (3필지)		잡	2,198	2,198								
112	연산동	618-27	잡	1,183	1,183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1-1006	오경호					
113	연산동	642-13	잡	208		연산동 633		박진				
114	연산동	775-24	잡	807	807	연산동 775-24	최성곤	압류	목포 세무서			
								압류	국민연금 공단 (목포지사)			
								압류	근로복지 공단 (목포지사)			
								가입류	박종철	광주시 북구 용봉동931-1 동우케미칼		
								근저당권	증소기업 은행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0 (목포지점)		
								근저당권	증소기업 은행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0 (목포지점)		
								근저당권	증소기업 은행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0 (목포지점)		

■ 지장물 조서

토 지 소재지	지번	불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연산동	633	건축물	-	2동	석현동 1168	박창민	원산자동차 공업사
"	639-2 639-7	"	-	3동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201-1504	최순님	서해폐차장
"	639-1 639-5 639-17 639-18	"	-	4동	연산동 639-17	유금성	
"	641-3 641-4	"	-	2동	연산동 641-3	김영자	
"	641-1	"	-	1동	연산동 641-1	김옥락	
"	641-2	"	-	1동	연산동 641-2	황정예	
"	641-6 775-40	"	-	4동	연산동 641-6	정옥철	
"	642-3 775-17 775-55 942-7	"		4동	연산동 642-3	박권문	
"	775-27	"	-	2동	연산동 775-27	정복태	
"	775-26	"	-	2동	연산동 775-26	안천명	
"	775-24	"	-	2동	연산동 775-24	최성곤	국제자동차 공업사
"	639-8	하우스	-	1동	연산동 639-17	유금성	
"	775-6	"	-	1동	연산동 641-6	정옥철	
"	775-16	"	-	1동	연산동 642-3	박권문	
"	775-22	"	-	2동	-	-	
"	642-2	관정	-	2식	연산동 641-3	김영자	
"	775-22	"	-	1식	-	-	
"	775-50	"	-	1식	연산동 775-24	최성곤	
"	651	묘지	-	1기			
"	635-11	"	-	2기			
"	663-11	"	-	2기			
"	652-1	"	-	2기			
"	775-16	"	-	1기			
"	775-18	"	-	1기			
"	638-3	"	-	1기			
"	639-15	"	-	1기			
"	639-1	"	-	2기			
"	639-6	"	-	1기			
"	775-15	"	-	1기			
"	641-3 641-4 642-2	수록	-	33주	연산동 641-3	김영자	파실나무 31주 관상나무 2주
"	641-1	"	-	5주	연산동 641-1	김옥란	파실나무 5주
"	639-17 639-19	"	-	8주	연산동 639-17	유금성	파실나무
"	639-5	"	-	98주	연산동 639-17	유금성	파실나무 35주 약재나무 35주
"	629-1	"	-	17주	연산동 641-6	정옥철	파실나무
"	641-6						
"	775-40						
"	642-3 642-7 775-17 442-47 775-55	"	-	56주	연산동 642-3	박권문	파실나무 50주 관상나무 50주
"	775-27	"	-	7주	연산동 775-27	정복태	파실나무 6주 관상나무 1주
"	775-26 775-46	"	-	41주	연산동 775-26	안천명	파실나무 24주 관상나무 17주

토지 소재지	지번	불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연산동	775-18	수목	-	69주	-	-	과실나무
"	646-1	"	-	370주	-	-	과실나무 322주 약재나무 48주
"	776-1	"	-	33주	-	-	약재나무
"	775-15	"	-	60주	-	-	과실나무
"	633-3	"	-	75주	-	-	약재나무
"	-	한전주	-	20동	-	-	

■ 편입건축물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관리관계	체무자	권리자		
1	목포시 연산동	618-1	64	장	3,856.64	제단법인전남 테크노파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6블럭 (을촌제1지방산업단지내)				
2	목포시 연산동	633-1	0	장	201.12	윤연해	용당동 885-6	근지당권 윤연해	목포농업 협동조합	석현동 556-1	
3	목포시 연산동	639-1	2	전	A동: 230, B동: 86.25	최수남	용해동 1025 호민보전시빌 스위트 201-1504	근지당권 최수남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하당지점)	
4	목포시 연산동	639-1	3	대	83.00	조덕수	용당동 882-17	등기부 등본누락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하당지점)	
5	목포시 연산동	775-1	24	잡	226.70	최성곤	연산동 775-24	임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목포지사)		
6	목포시 연산동	775-1	26	대	96.53	안현영	연산동 775-26	임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목포지사)		
							기임류	박종철	광주시 북구 용봉동 931-1 동우케미칼		
							임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근지당권	최성곤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0 (목포지점)		
							근지당권	최성곤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1 (목포지점)		
							근지당권	최성곤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52 (목포지점)		
							근지당권	안천영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시 종로 남대문로 5가 6-1	

화순군 고시 제2010-72호

군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0. 12. 20

화순군수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8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학교시설)
 - 명칭 :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및 부지조성공사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남대학교 총장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3(용봉동 300)
-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적 : 47,486 m²
 - 건축면적 : 9,422 m²
 - 연면적 : 33,196 m²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 2009. 1. 5 ~ 2010. 12. 31
 - 변경 : 2009. 1. 5 ~ 2015.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사 : 기재생략(군청 도시과 비치)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8. 관련도서 : 재생략

(화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광군 고시 제2010-69호

**영광군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8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10-34호(2010.5.20)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된 영광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호선)사업 "소로2-8호선 확장공사(중앙초교 진입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0

영광군수

1. 실시계획 인가사항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90-19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2-8호선)

· 명칭 : 소로 2-8호선 확장공사(중앙초교 진입로)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L=9m, B=8m, A=73 m²

규모	기능	면적 (m ²)	연장			시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총연장	기준 시행	금회 시행				
소로	2	8	8	국지도로	73	135	44	9	중로 1-1 소로 2-9 일반 도로

라.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본 과업은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위치한 도로로, 군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 원활로 학교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

· 성명 : 영광군수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기정 : 2010. 12. 31.

- 변경 : 2011. 12. 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과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편입 예정 (m ²)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영광	백학	90-19	대	73	73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4-55	강창수	공유지분 (83/344)	영광군
계	1필지					73				

3.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변경없음) : 재생략

4. 기타문의

· 영광군청 도시과 도시담당(☎061-350-5485)

전라남도 고시 제2010-372호

영광 상오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계획승인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삼면 오동리 일원 상오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승인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가. 용도별 구획면적(변경없음)

(단위 : m^2)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고
		공동 이용시설	배수지	저류시설	도로	생활 체육시설	공원	
329,262	230,947	2,264	1,477	4,324	40,788	2,576	19,392	27,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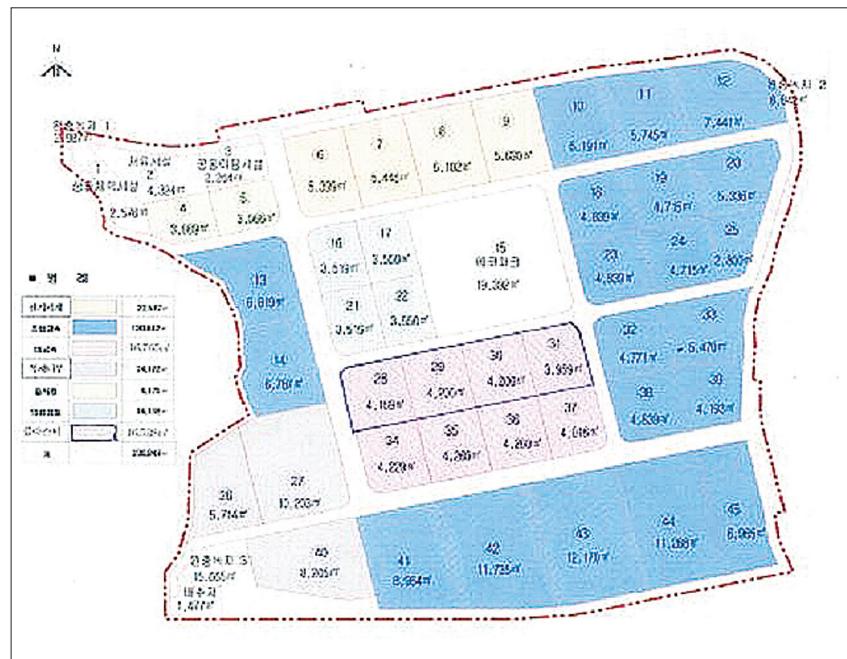
※ 관련도면은 관계도서에 별첨(열람시 확인가능)

나.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 다. 배치기준(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입주업체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라.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업종별 배치 변경 계획도

(단위: $m^2, %$)

구분	당초			변경		
	필지수	면적	구성비	필지수	면적	구성비
계	41	230,947	100.0	41	230,947	100.0
목재나무	3	24,122	9.8	3	24,122	10.4
조립금속	20	130,642	56.6	20	130,642	56.6
비금속	8	33,293	14.4	4	16,765	7.2
전기기계	4	22,577	10.4	4	22,577	9.8
음식료	2	6,175	2.7	2	6,175	2.7
의료정밀	4	14,138	6.1	4	14,138	6.1
플라스틱	0	0	0	4	16,528	7.2



2) 블록별(업종별) 공장 변경 배치

블럭번호	면적 (m^2)	비고	블럭번호	면적 (m^2)	비고
4	3,089	음식료	26	5,714	목재나무
5	3,086		27	10,203	
6	5,399	전기기계	28	4,169	플라스틱 (고무제외)
7	5,446		29	4,200	
8	6,102		30	4,200	
9	5,630		31	3,959	
10	6,191	조립금속	32	4,771	조립금속
11	5,745		33	5,470	

블럭번호	면적 (m^2)	비고	블럭번호	면적 (m^2)	비고
12	7,441	조립금속	34	4,229	비금속 (시멘트 제외)
13	6,819		35	4,260	
14	6,787		36	4,260	
16	3,519		37	4,016	
17	3,550	의료정밀	38	4,839	조립금속
18	4,839		39	4,193	
19	4,715		40	8,205	
20	5,336		41	8,984	
21	3,519	의료정밀	42	11,735	조립금속
22	3,550		43	12,170	
23	4,839		44	11,288	
24	4,715		45	6,965	
25	2,800				

※ 전체 필지수 및 면적 : 41필지 230,947 m^2

5.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없음)

- 단지 내 오픈수처리시설은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유입·처리되므로 시설 불필요

나.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동이용시설(관리사)건축물
 - 부지면적 : 2,264 m^2
 - 건축면적 : 233.21 m^2 (연면적 396.4 m^2)
 - 사업비 : 383백만원

다.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및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계획은 군수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6. 기타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변경없음)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분양된 업체의 관리비 징수 등 임대업무를 제외한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도록 함.

나. 입주기업체의 지원(변경없음)

- 용수 공급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 입주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 농공단지의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 ①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②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농공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 ⑤ ④과 관련된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와 경비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 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 후 지원

III. 관계도서 열람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43) 및 담양군 경제과에 (☎ 061-380-3051)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0-400호

화순 백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 세목(변경)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시행중인 백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을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관개개선,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사업의 목적
2. 사업지구명 : 백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3. 위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와 6개리 지내

2010 제2회

전라남도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고모전
L O L

전남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남도적인 생태환경의 디지털 또는 휴대폰 카메라 사진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전남의 생태환경을 소재로 촬영된 디지털 사진

공모기간

2010. 11. 1 ~ 2010. 12. 31

공모규격

디지털 사진(JPG파일, 1,280×960 pixel 이상)

응모방법

응모사진을 공모전 홈페이지(www.jntv.go.kr)에 올리고 e-mail로 참가신청서와 응모사진 디지털 원본파일 전송

출품비

없음

당선작발표

2011. 1. 21

시상내용

총 16점(전라남도지사 상장 및 농산물 상품권)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 선
작품 수	1	2	3	10
시상금(점당)	30만원	20 만원	10 만원	5만원

*상세내용 : 전라남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www.jntv.go.kr) 참고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공보관실 ☎ 061-286-2082



전라남도